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6.

발 의 자 : 정일영 · 허성무 · 서영석
진성준 · 윤후덕 · 정진욱
박용갑 · 이춘석 · 안호영
이병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·수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,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, 어린이·임산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가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, 장애인은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이 곤란한 실정임. 이에 따라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,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, 음성,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, 안전확인대상생활

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).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임산부 등”을 “임산부, 장애인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제10조제8항”을 “제10조제8항·제9항”으로, “표시기준”을 “한글표시기준·점자등표시기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3호 중 “임산부 등”을 “임산부, 장애인 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표시기준”을 “한글표시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표시기준”을 “한글표시기준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2항(중전의 제10항) 중 “변경신고 및 제8항”을 “변경신고, 제8항·제9항”으로, “표시기준”을 “한글표시기준·점자등표시기준”으로 한다.

- ⑨ 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자는 시각장애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겉면 또는 포장에 점

자 등의 표시(이하 “점자등표시기준”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점자등표시기준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제6호 중 “제10조제8항”을 “제10조제8항·제9항”으로, “표시기준”을 “한글표시기준·점자등표시기준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1호라목 중 “표시기준”을 “한글표시기준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제10조제9항에 따른 점자등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
활화학제품

제60조제2항 중 “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
2.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점자등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
법 시행 이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
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) 생활화학제 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 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 다.	제2조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)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어린이, <u>임산부</u> 등 생활화학 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 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 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.	2. ----- <u>임산부, 장애인</u> 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)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 생물제 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6조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	3. -----

준, 제10조제8항에 따른 <u>표시</u> <u>기준</u>에 관한 사항 4. ~ 9. (생 략) ② ~ ⑦ (생 략) 제9조(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) ① (생 략)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· 2. (생 략) 3. 용기 · 포장 또는 그 내용물 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 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 장에 관한 기준(어린이, <u>임산</u> <u>부</u>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 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) 4. (생 략)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(안전기준의 확인 및 <u>표시</u> <u>기준</u> 등) ① ~ ⑦ (생 략)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	--제10조제8항 · 제9항----- <u>한글표시기준</u> · <u>점자등표시기</u> <u>준</u>----- 4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제9조(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<u>임산부</u>, <u>장애인</u> 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(안전기준의 확인 및 <u>한글</u> <u>표시기준</u>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
---	--

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
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
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
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(이하
“표시기준”이라 한다)하여야 한
다.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
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.

1. ~ 8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⑨ (생 략)

⑩ 제1항에 따른 확인, 제4항에
따른 신고, 제5항에 따른 변경
신고, 제6항에 따른 승인, 제7

-----한
글표시기준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⑨ 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
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
장에 표시하는 자는 시각장애
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8
항 각 호의 사항 중 기후에너
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
겉면 또는 포장에 점자 등의
표시(이하 “점자등표시기준”이
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
9항에 따른 점자등표시기준의
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
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⑪ (현행 제9항과 같음)

⑫ -----

항에 따른 변경승인·변경신고
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
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
품의 제조·수입 금지 등) ①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
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
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
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
금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
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
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
하는 경우

7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5조(판매 등의 금지) ① 누구
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
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

-----변경신고,
제8항·제9항-----한글표시
기준·점자등표시기준-----

-----.

제11조(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
품의 제조·수입 금지 등) ①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10조제8항·제9항-----
한글표시기준·점자등표시기
준-----

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판매 등의 금지) ① -----

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,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 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
<신 설>

2. ~ 4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60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1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한글 표시기준-----

마. 제10조제9항에 따른 점자 등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-----
-----.

1.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

2.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

③ (생 략)	<u>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